

# WE ARE YOUR DOL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근로기준과(Division of Labor Standards)

## 농장 근로자를 위한 임금 지급 통지 및 승인

본 통지서를 제대로 작성하시면 다음 사항을 충족하게 됩니다:

- 뉴욕주 노동법 섹션 195의 임금 통지 조항
- Part 190, 농장 최저 임금령(Farm Minimum Wage Order)의 서면 근로 계약 조항

### 1. 고용주 정보:

이름: \_\_\_\_\_ 전화: \_\_\_\_\_

상호명(DBA): \_\_\_\_\_

실제 주소: \_\_\_\_\_

우편 주소: \_\_\_\_\_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선택사항): \_\_\_\_\_

2. 통지 시점:  고용 시  임금률, 청구 수당, 임금 지급일이 변경되기 전

### 3. 구체적인 근무 장소:

### 4. 활동 업무 유형:

5. 시간: \_\_\_\_\_

뉴욕주 노동법 섹션 161.1에 따라 시간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해당하는 경우 방의 개수 및 조리시설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제공된 주거 형태를 설명해주시요:

7. 직원 정규 지급 및 초과근무수당: \_\_\_\_\_

기본 급여율을 명기하십시오(시간당, 교대근무 기준, 일당, 주당, 월급 또는 유닛당). (유닛 용량을 알려주십시오.)

요일: \_\_\_\_\_ 다음 당: \_\_\_\_\_ 초과근무수당: \_\_\_\_\_

요일: \_\_\_\_\_ 다음 당: \_\_\_\_\_ 초과근무수당: \_\_\_\_\_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급여율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이 시간 단위가 아닌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주당 여러 급여율에 대한 가중 평균의 최소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섹션 163-a NYS 노동법: 2020년 1월 1일부터 농업 부문 고용주는 역주 동안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직원의 정규 급여율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직원은 문제의 역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8. 급여일: \_\_\_\_\_ 주말: \_\_\_\_\_

9. 지급 빈도: 주 단위: \_\_\_\_\_ 기타: \_\_\_\_\_

10. 수당(해당하는 경우)은 최저임금에 편입:

일별 식사 수: \_\_\_\_\_ 한 끼당 금액: \$ \_\_\_\_\_

숙박: \$ \_\_\_\_\_

현물 지급 \$ \_\_\_\_\_ 구체적으로 기술: \_\_\_\_\_

11. 계획된 모든 급여 공제(예: 건강 보험, 퇴직 연금, 기타):

12. 고용주가 제공한 혜택(예: 유급 병가, 휴가, 휴무일, 휴일 기타):

13. 대략적인 고용 기간: 시작 날짜: \_\_\_\_\_ 종료 날짜: \_\_\_\_\_

14. 비경제적 고용 조건(예: 교통 수단 제공, 의료 서비스, 보육, 학교 등):

15. 휴무일: \_\_\_\_\_

고용주는 휴무일에 농장 근로자에게 근무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휴무일에 자원 근무하는 농장 근로자에 대해 정규 급여율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섹션 161.1 NYS 노동법: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장 근로자는 매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상 상황이나 농작물 조건으로 인한 24시간 연속 휴무는 역주의 휴무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휴무일에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직원의 정규 급여율의 최소 1.5배를 보상하는 경우, 이 조항의 어느 것도 농장 근로자가 자신의 휴무일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16. 직원 승인 및 확인:

이날 저는 급여, 초과 근무 수당, 휴식일, 수당 및 월급날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고용주에게 제 기본 언어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기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 급여 통지를 받았다.

직원의 이름(정자체):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17. 준비자의 이름(정자체): \_\_\_\_\_ 직책: \_\_\_\_\_

**직원은 이 문서의 서명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원본을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섹션 195 NYS 노동법: 고용주는 고용 시 모든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이 통지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이 임금 명세서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변경 시점 7일 전에 피고용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 사항이 피고용인의 임금 명세서에 반영되더라도 고용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용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용인의 급여율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병가, 휴가, 개인휴가, 휴일 및 시간에 대해 서면 또는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기록을 6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농장 근로자의 뉴욕주 최저 임금: 고용주는 농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다음 항목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근로 계약서 사본 및
- 농장 최저 임금 조항을 개괄하는 NYS 노동부 발행 게시물.

직원에게 이성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직원이 보호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동료와 논의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 내역에 대해 문의할 수 없습니다.